

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

2024. 3.



여 성 가 족 부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7조,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및 시행규칙 제3조와 관련하여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자격 보유자 등에 대해서는 단축된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「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제1항에 ‘단서’를 신설하여 간호조무사 등*을 대상으로는 교육이수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

* 간호조무사, 건강가정사, 사회복지사, 청소년상담사, 청소년지도사, 영양보호사, 아동양육 관련 학사 이상 소지자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에 “다만, 간호조무사 등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이수 시간 등을 달리할 수 있다.”라는 ‘단서’를 신설하고 제3조제6항의 “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, 교육내용 및 적성·인성 검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”의 조항에 “교육이수 시간”을 포함하여 “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, 교육이수 시간, 교육내용 및 적성·인성검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”로 개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)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은 80시간 이상의 교과학습과 10시간 이상의 실습으로 한다.	제3조(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) ①----- ----- ----- ----- . 다만, 간호 <u>조무사 등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이수 시간 등을 달리할 수 있다.</u>
② ~ ⑤ (생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아이돌보미의 <u>교육과정, 교육내용 및 적성· 인성 검사 등에 필요한 세부 사 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</u>	⑥ ----- ----- <u>교육과정, 교육이수 시간, 교육 내용 및 적성·인성 검사 등에</u> ----- ----- 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	
연 락 처	(02) 2100 - 6247